| 국토교통부 | 보 도 자 료 | |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|
|---|---|---|---|
| | 배포일시 | 2018. 12. 3.(월)<br>총 2매(본문 2매) | |
| 담당 부서 | 녹색도시과 | 담 당 자 | ·안경호 과장, 지현근 사무관<br>·☎ (044) 201-3742, 3751 |
| 보 도 일 시 | | 2018년 12월 4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>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4.(화) 10:00 이후 보도 가능 | |

#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…임차공원제도 시행

## 국토부,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…미집행공원 해소에 도움 기대

□ **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**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**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**을 정하고, 도시공원 내 **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** 등을 내용으로 하는 **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**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□ 1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**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**은,

① **임차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기준 등 규정** (시행령 제10조의2)

○ **임차공원 제도**는 「**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**」 **개정**(6.12.)에 따라 지자체가 **공원 부지**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**사용계약을 체결**하여 **도시공원을 조성**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,

○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**부지사용료**를 「토지보상법」에 따라 **감정평가하여 산정**토록 하고, **최초계약기간**은 **3년 범위**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등 **세부 운영기준**과 계약 체결·변경 시 **안내방법** 등을 규정하여 **임차공원 제도가 시행**될 수 있도록 하였다.

○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**제도적 기반이 마련**됨에 따라 지자체의 **재정적 부담을 완화**하여 **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**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② **개인형이동수단 시범운행 근거 마련** (시행령 제50조제5호)

○ 전동킥보드, 세그웨이 등 **개인형이동수단**을 이용하는 **인구가 확대**되고 있으나, **현행법상 차도로만 통행**이 허용되어 **탈 곳이 없고 신규 유망산업 활성화에 제약**이 되어 왔다.

○ 이에, 개인형이동수단의 **활용공간 확대**를 위해 **지자체가**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**종류** 및 **통행구간** 등을 **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**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, **안전문제를 고려**하여 이동수단의 중량은 30kg 미만, 속도는 25km/h로 제한하였다.

③ **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** (시행령 제29조제5호)

○ 도시의 **자연환경 및 경관보호** 등을 위해 **지자체장**은 적합한 산지를 **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·운영하고 있으나,** 해당 구역 내의 **거주자**는 산림 솎아베기, 나무를 심는 행위, 논·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외에는 **모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**이 있었다.

○ 이에,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**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**를 위한 논·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,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,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여 **거주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**으로 예상된다.

□ **국토교통부 이성해 도시정책관**은 "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**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**할 수 있도록 하고, 도시민의 **생활방식 변화**에 맞추어 도시공원이 **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**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**지속적으로 제도개선**을 하겠다"고 밝혔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지현근 사무관(☎ 044-201-37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